

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2021. 2. 25.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김규식

1. 제출자: 성동구청장

2. 제안이유

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유관기관(성동경찰서)과의 주요 협력 활동에 대한 명시적·구체적 근거를 규정하고,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담당부서의 분석정보 활용하는 방안을 신설(안 제5조)
- 나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운영 중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고, 조례 내 인용된 제명 변경 사항 반영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
1)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별첨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1. 12. 31. ~ 2021. 1. 2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,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5) 신·구 조문 대비표, 별첨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주요 협력 활동에 대한 명시적·구체적 근거를 규정하고,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5조에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담당부서의 분석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신설하고,
- 안 제8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운영 중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전문가가 참석하도록 개정하고, 조례 내 인용된 제명¹⁾

1)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」가 폐지되고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 반영(2020.5.19. 제정)

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

-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공간에서의 강력범죄 증가를 예방하고 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을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2016년 12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,
- 유관기관과의 주요 협력 활동에 대한 실질적 규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, 성동경찰서와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
- 아울러,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안전시설물을 디자인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